

【 6 】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제안년월일 : 1998. 11. 14.

제 안 자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안이유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감사계획서안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주요내용

- 감사목적
- 감사기간
- 감사대상기관
- 감사반 편성
- 주요감사 실시요령

붙 임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1부. 끝.

【 7 】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증개정조례안 제의요구안

제출년월일 : 1998. 11. 14.

제 출 자 : 양 주 군 수

1998년 11월 3일 양주군의회로부터 이송되어온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로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합니다.

제안이유

-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중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과태료의 액수에 차등을 두고 있는 경우.
- 그와 같은 차별은 증인의 불출석이나 증언 거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고 지위의 높고 낮음만을 기준으로 한 부당한 차별대우라고 할 것이어서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임.
- 대법원 판례 96추213(97. 2. 25)

- 첨부
-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판례문 사본
  - 관계법령 발췌서

의안번호	제751호
의결	1998. 11. 2.
년 월 일	(제72회 임시회)

의 결 사 항
------------------

원안가결

양주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자	유재원의원외 2인
발의 년 월 일	1998. 10. 22.

##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51
----------	-----

제안년월일 1998. 10. 22

제 안 자 유재원의원외 2인

### 1. 제안이유

- 양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제5조제1항제5호의 군립도서관을 삭제하고 부서명칭을 조정하고자 함.
- 현실에 맞지 않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위반 대상자별과 위반행위별로 하여 불출석과 증언거부로 대별하여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하여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감사 및 조사대상 기관의 군립도서관을 삭제함.
-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타로 변경(안 제5조제1항제3호)
- 상수도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명칭을 변경.  
(안 제5조제1항제5호)
- 과태료 부과 근거조항을 신설함(안 제9조의2)

조례 제 · 호

##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5조 제1항제3호의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타”로 한다.

제5조 제1항제6호를 제5호로 하고 제5호(종전의 6호) “상수도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한다.

제9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9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 2(과태료) ①제9조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또는 관련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양주군 공무원(이하 “집행부공무원”이라 하며, 감사·조사대상사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에 전출·전보되었을 경우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위반행위별 직급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1]과 같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으로 전출·전보된 공무원의 직급은 감사·조사대상사무 취급당시의 직급을 기준으로 한다.
2. 제5조제1항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임·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임직원(퇴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위반행위별 직책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이 경우 출석요구 당시의 재직자는 출석요구시점 현재의 직책을, 퇴직자는 감사·조사대상사무 취급당시의 최종 직책을 기준으로 한다.
3. 감사·조사대상사무 시행기간중에 집행부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면직·파면 및 퇴직한 사람(이하 “퇴직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위반행위별 직급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3]과 같다. 이 경우 직급은 감사·조사대상사무를 담당할 때의 최종직급을 기준으로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집행부공무원, 기관 및 단체등의 임직원, 퇴직공무원등을 제외한 사람(이하 “민간인”이라 한다.)에 대한 위반행위별 증인의 유형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4]와 같다.

②과태료 처분대상 위반행위의 회수는 당해 감사·조사기간의 범위안에서 산정한다.

③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불출석 또는 증언거부사실 통보등에 의하여 양 주군수(이하 “부과권자”라 한다) 가 부과징수 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양주군군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⑤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부과권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위반사실과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부과권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⑧부과권자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의장의 통보와 증인의 의견진술등으로 알 수 있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집행부 공무원에 대한 위반행위별 직급별 과태료부과기준  
(제9조의2 제1항제1호 관련)

(단위:만원)

위반행위별	실·국장급이상	과장급	제장급 이하
출석요구불응2회 이상	500~400	300~200	100~70
출석요구불응1회	350~300	150~100	50~30
증언전체거부2회 이상	350~300	150~100	50~30
증언전체거부1회	250~200	70~50	20~10
증언일부거부2회 이상	250~200	70~50	20~10
증언일부거부1회	150~100	30~20	5이하

- 〈비고〉 1. “~” 기호 왼쪽은 그 금액 이하, 오른쪽은 그 금액 이상을 말한다.  
 2. 출석요구불응1회는 1일간의 불출석을, 증언전체 또는 일부거부 1회  
 는 1일간의 증언의 전체 또는 일부거부를 말한다.

## [별표2]

위탁법인 및 단체의 장 또는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별 직책별 과태료  
부과기준(제9조의2 제1항제2호 관련)

(단위:만원)

위반행위별	위탁법인 및 단체	
	대표	임직원
출석요구불응2회 이상	200~150	100~70
출석요구불응1회	100~70	50~30
증언전체거부2회 이상	100~70	50~30
증언전체거부1회	50~30	20~10
증언일부거부2회 이상	50~30	20~10
증언일부거부1회	20~15	5이하

- 〈비고〉 1. “~” 기호 왼쪽은 그 금액 이하, 오른쪽은 그 금액 이상을 말한다.  
 2. 출석요구불응1회는 1일간의 불출석을, 증언전체 또는 일부거부 1회  
 는 1일간 증언의 전체 또는 일부거부를 말한다.

[별표3]

퇴직공무원에 대한 위반 행위별 직급별 과태료부과기준  
(제9조의2 제1항제3호 관련)

(단위:만원)

위반 행위별	실 · 국장급	과장급	계장급 이하
출석요구불응2회이상	200~150	100~70	50~30
출석요구불응1회	100~70	50~30	25~15
증언전체거부2회이상	100~70	50~30	25~15
증언전체거부1회	50~30	20~10	10~5
증언일부거부2회이상	50~30	20~10	10~5
증언일부거부1회	20~10	5이하	3이하

- 〈비고〉 1. “~” 기호 왼쪽은 그 금액 이하, 오른쪽은 그 금액 이상을 말한다.  
 2. 출석요구불응1회는 1일간의 불출석을, 증언전체 또는 일부거부 1회는 1일간 증언의 전체 또는 일부거부를 말한다.

[별표4]

민간인에 대한 위반 행위별 증인유형별 과태료 부과기준  
(제9조의2 제1항제4호 관련)

(단위:만원)

위반 행위별	감사 · 조사대상	감사 · 조사대상	기타
	사건 · 사고관련 직접당사자	사건 · 사고관련 간접당사자	
출석요구불응2회이상	100~70	50~35	30~25
출석요구불응1회	50~35	30~25	20~15
증언전체거부2회이상	50~35	30~25	20~15
증언전체거부1회	30~25	20~15	10~5
증언일부거부2회이상	30~25	20~15	10~5
증언일부거부1회	20~15	10~5	3이하

- 〈비고〉 1. “~” 기호 왼쪽은 그 금액 이하, 오른쪽은 그 금액 이상을 말한다.  
 2. 출석불응1회는 1일간의 불출석을, 증언전체 또는 일부거부 1회는 1일간 증언의 전체 또는 일부거부를 말한다.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2 (생략)  <u>3. 농촌지도소</u>          4. (생략)  <u>5. 군립도서관</u>  <u>6. 상수도사업소</u>          7 - 9 (생략)</p>	<p>제5조 (감사 또는 대상기관) ① -----  -----</p> <p>1- 2 (현행과 같음)  <u>3. 농업기술센타</u>          4. (현행과 같음)  <u>5. (삭 제)</u>  <u>6. 상하수도사업소</u>          7 - 9 (현행과 같음)</p>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p> <p>① - ③ (생략)</p> <p>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기부한 때에는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통보등으로 군수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p> <p>⑤ (생 략)</p> <p>⑥ (생 략)</p> <p>제9조의 1(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p> <p>① - ③ (생략)</p> <p>( 신 설 )</p>	<p>① - ③ (현행과 같음) (삭제)</p> <p>⑤ (현행과 같음)</p> <p>⑥ (현행과 같음)</p> <p>제9조의 1(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제9조의 2(과태료) ① 제9조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또는 관련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기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양주군(이하 “집행부공무원”이라 하며, 감사·조사대상사무를 담당한 공무원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에 전출·전보되었을 경우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위반 행위별 직급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1]과 같다.</p>

현 행	개 정 안
	<p>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으로 전출·전보된 공무원의 직급은 감사·조사 대상사무 취급 당시의 직급을 기준으로 한다.</p> <p>2. 제5조 제1항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임·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임직원(퇴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위반행위별 직책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이 경우 출석요구 당시의 재직자는 출석요구시점 현재의 직책을, 퇴직자는 감사·조사대상사무 취급 당시의 최종 직책을 기준으로 한다.</p> <p>3. 감사·조사대상사무 시행기간 중에 당해 부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면직·파면 및 퇴직한 사람(이하 “퇴직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위반행위별 직급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3]과 같다. 이 경우 직급은 감사·조사대상사무를 담당할 때의 최종 직급을 기준으로 한다.</p> <p>4. ①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 및 단체등의 공무원 및 임직원등을 제외한 사람(이하 “민간인”이라 한다)에 대한 위반행위별 증인의 유형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4]와 같다.</p> <p>② 과태료 처분대상 위반행위의 회수는 당해 감사·조사기간의 범위안에서 산정한다.</p> <p>③ 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불출석 또는 증언기부사실 통보등에 의하여 양주군수(이하 이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 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p>

현 행	개 정 안
	<p>아니하였거나 증인을 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④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양주군군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p> <p>⑤ 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⑥ 부과권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위반사실과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⑦ 부과권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p> <p>⑧ 부과권자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의장의 통보와 증인의 의견진술 등으로 알수 있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p>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집행부 공무원에 대한 위반행위별 직급별 과태료부과기준 (제9조의 2 제1항제1호관련)						
(단위:만원)						
위반행위별	위탁법인 및 단체					
	대표	임직원				
	출석요구불응2회 이상	200~150	100~70			
	출석요구불응1회	100~70	50~30			
	증언전체거부2회이상	100~70	50~30			
	증언전체거부1회	50~30	20~10			
	증언일부거부2회이상	50~30	20~10			
증언일부거부1회	20~15	5이하				
<u>〈비고〉</u> 1. “~” 기호 왼쪽은 그 금액 이하, 오른쪽은 그 금액 이상을 말한다.						
2. 출석요구불응1회는 1일간의 불출석을, 증언전체 또는 일부거부 1회는 1일간의 증언의 전체 또는 일부거부를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2]	위탁법인 및 단체의 장 또는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별 적체별 과태료 부과기준(제9조의 2 제1항제2호 관련)	
위반행위별	위탁법인 및 단체	
	대표	임직원
출석요구불응2회 이상	200~150	100~70
출석요구불응1회	100~70	50~30
증언전체거부2회이상	100~70	50~30
증언전체거부1회	50~30	20~10
증언일부거부2회이상	50~30	20~10
증언일부거부1회	20~15	5이하
<p>〈비고〉 1. “~” 기호 왼쪽은 그 금액 이하, 오른쪽은 그 금액 이상을 말한다.</p> <p>2. 출석요구불응1회는 1일간의 불출석을, 증언전체 또는 일부거부 1회는 1일간 증언의 전체 또는 일부거부를 말한다.</p>		

현 행	기 정		
	[별표3] 퇴직공무원에 대한 위반 행위별 직급별 과태료부과기준 (제9조의2 제1항제3호 관련)		
위반 행위별	실 · 국장급	과장급	계장급 이하
출석요구불응2회이상	200~150	100~70	50~30
출석요구불응1회	100~70	50~30	25~15
증언전체거부2회이상	100~70	50~30	25~15
증언전체거부1회	50~30	20~10	10~5
증언일부거부2회이상	50~30	20~10	10~5
증언일부거부1회	20~10	5이하	3이하

〈비고〉 1. “~” 기호 왼쪽은 그 금액 이하, 오른쪽은 그 금액 이상을 말한다.  
 2. 출석요구불응1회는 1일간의 불출석을, 증언전체 또는 일부거부 1회  
 는 1일간 증언의 전체 또는 일부거부를 말한다.

현행	개정		
<b>[별표4]</b> <u>민간인에 대한 위반 행위별 증인유형별 과태료 부과기준</u> (제9조의2 제1항 제4호 관련)			(단위:만원)
위반 행위별	감사·조사대상 사건·사고관련 직접당사자	감사·조사대상 사건·사고관련 간접당사자	기타
출석요구불응2회이상	100~70	50~35	30~25
출석요구불응1회	50~35	30~25	20~15
증언전체거부2회이상	50~35	30~25	20~15
증언전체거부1회	30~25	20~15	10~5
증언일부거부2회이상	30~25	20~15	10~5
증언일부거부1회	20~15	10~5	3이하

〈비고〉 1. “~” 기호 왼쪽은 그 금액 이하, 오른쪽은 그 금액 이상을 말한다.

2. 출석불응1회는 1일간의 불출석을, 증언전체 또는 일부거부 1회는 1일간 증언의 전체 또는 일부거부를 말한다.

## [판례]

- 신분에 따른 부당한 차별대우를 정한 조례는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판례(大判 1997. 2. 25, 96후213)

[1]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은 중인의 출석 또는 증언거부의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은 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담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례가 과태료의 하한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36조제7항은 지방의회의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4, 5항의 선서·증언·감정에 관한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에는 과태로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조례의 과태로 부과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위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은 법 제36조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것으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위 시행령에 근거하여 과태로 부과의 하한을 정한 조례안을 가리켜 법률의 위임없이 법률보다 더 두거운 제재를 정한 무효의 조례라고는 할 수 없다.

[2] 조례안이 지방의회의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중인이 5급이상 공무원인지 여부, 기관(법인)의 대표나 임원인지 여부 등 중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미리부터 과태료의 액수에 차등을 두고 있는 경우, 그와 같은 차별은 중인의 출석이나 증언거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목적에 비주어 볼 때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고 지위의 높고 낮음만을 기준으로 한 부당한 차별대우라고 할 것이어서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 예산안 확정후 단기간내에 실질적으로 예산변경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례는 무효라는 판례(大判 1997. 9. 9, 97후36)

광역시 구의회가 1997년도 같은 구 예산이 확정된 직후에 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아무런 의견도 듣지 아니한 채 종래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되던 물품주정차단속경비를 일반회계에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위 예산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굽자로 하는 같은 구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한 것은, 특히 당해 조례안이 법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아무런 자료없는 당해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

## 관련법령요약

- 지방자치법 제19조 제2항 : 이송받은 조례안을 20일이내 공포  
제3항 : 이의가 있는 때에는 20일 이내에 재의요구  
제4항 : 재의 요구된 조례안을 2/3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  
    시 조례안은 확정  
제5항 : 이송된후 20일이내에 공포와 재의요구를 하지 않  
    을 경우 조례안은 확정  
제21조 : 의회에서 이송된 조례안은 5일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
-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 과태료 부과는 의장의 통보등으로 군수가 부과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은 조례로 정함  
제37조 제1항 : 재의요구는 의회가 폐회중인 때에도 할 수 있으며  
    재의 요구를 받은 의회는 10일이내에 재의에 불여야 함  
제2항 : 군수는 의회의 의결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그 의견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수 없음.

**第19條 (條例와 規則의 制定節次 등)** ① 條例案이 地方議會에서 議決된 때에는 議長은 議決된 날로부터 5日이내에 그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이를 移送하여야 한다.

②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第1項의 條例案을 移送받은 때에는 20日이내에 이를 公布하여야 한다. (改正 94·3·16)

③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移送받은 條例案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때에는 第2項의 期間내에 이유를 불여 地方議會로 還付하고 그 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條例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條例案을 修正하여 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再議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地方議會는 再議에 불여 在籍議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議員 3分의 2이상의 贊成으로 前과 같은 議決을 하면 그 條例案은 條例로서 확정된다.

⑤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第2項의 期間내에 公布나 再議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條例案은 條例로서 확정된다.

⑥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4項과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확정된 條例를 지체없이 公布하여야 한다. 第5項에 의하여 條例가 확정된 후 또는 第4項에 의한 確定條例가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移送된 후 5日이내에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公布하지 아니할 때에는 地方議會의 議長이 이를 公布한다.

⑦ 條例와 規則은 特別한 規定이 없는 한 公布한 날로부터 20日을 경과함으로써 效力を 발생한다.

⑧ 條例와 規則의 公布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0條 (條例違反에 대한 過怠料)** ① 地方自治團體는 條例로써 條例違反 行爲에 대하여 1千萬원이하의 過怠料를 정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그 管轄區域안의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賊謀·徵收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 第10編 地方制度 第2章 地方自治 地方自治法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全文改正 94·3·16)

第21條 (보고) 條例<sup>†</sup> 規則을 制定 또는 改廢하는 경우 條例에 있어서는 地方議會에서 移送된 날로부터 5日이내에, 規則에 있어서는 公布豫定 15日전에 市·道知事은 內務部長官에게, 市長·郡守 및 自治區의 區廳長은 市·道知事에게 그 全文을 첨부하여 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內務部長官은 이를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市·道知事은 市長·郡守 및 自治區의 區廳長으로부터 받은 보고중 內務部長官이 지정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자체없이 이를 內務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第4章 選舉

第22條 내지 第24條 削除 <94·3·16>

第25條 (地方選舉에 관한 法律의 制定) 地方選舉에 관하여 이 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 第5章 地方議會

## 第1節 組織

第26條 (議會의 設置) 地方自治團體에 議會를 둔다.

第26條의2 (地方議會議員의 選舉) 地方議會議員은 住民의 普通·平等·直接·祕密選舉에 의하여 選出한다.

(本條新設 94·3·16)

第27條 내지 第30條 削除 <89·12·30>

## 第2節 地方議會議員

第31條 (議員의 任期) ①地方議會議員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

②내지 ④削除 <94·12·20>

第32條 (議員의 議政活動費等) ①地方議會議員은 名譽職으로 하되, 다음 각號의

(추 55)

③의장은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자체없이 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 또는 조사를 행할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자체없이 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94·7·6>

[본조신설 91·4·1]

**제17조의3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4·7·6>

1. 당해 지방자치단체
2.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08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
3.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다만, 그 감사 또는 조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지방의회에의 보고로 갈음하되,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4.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5. 법 제9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의 출자·출연법인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지방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2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항에 있어서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상호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1·4·1]

**제17조의4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등)** ①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94·7·6>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

## 第10編 地方制度 第2章 地方自治 지방자치법시행령

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4·7·6>

④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당해 지방의회의장의 통보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되,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95·7·1>

⑤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94·7·6>

⑥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94·7·6>

(본조신설 91·4·1)

**제17조의5**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지방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지방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등 실비를 지급한다.

(본조신설 94·7·6)

**제17조의6**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증인 재판 또는 수사증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91·4·1)

**제17조의7** (제척과 회피) ①지방의회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